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시행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12. ~ 12. 22.)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80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에 제35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5의5. 제44조의2제7항에 따른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5서식에 따른다.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3호 중 “제102조제2항제9호, 별지 제24호의4서식(1)”을 “제102조제2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부칙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지 제24호의4서식(1)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제6조(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지급한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제23호서식(3) 및 제23호서식(6), 제24호서식(1) 및 제
2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 제37호서식, 제37호의2서식, 제44호서식, 제45호서
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인)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 천 징 수 명 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 득 지 급 (과세 마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거·주·비·거·주·자)	근 소 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 말 정 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퇴 직 소 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가감계	A20									
	사 업 소 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 타 소 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 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가상자산	A49									
		인적용역	A59									
		그 외	A42									
		가감계	A40									
	연 금 소 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금융투자소득	A71										
저축 등 해지 추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②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⑮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 ⑰)	⑰ 당월 조정 환급세액계	⑱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⑰)	㉑ 환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 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 회사 등)	⑰ 그 밖의 환급 금 회 사 등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

작성방법 (1)

※ 참고사항

- 신고서(부표 등) 작성 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를 해당란의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A01, A02, A03, A04, 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기타소득 중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A49), 인적용역소득(A59),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금융투자소득(A71),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 등 해지 추정세액 등(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환급신청대상 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관하여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관하여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금융투자소득(A71)에 관하여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에 따른 인적용역소득(A59)에 관하여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위임받은 자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 가. ① 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도 "○" 표시를 합니다.
- 나. ②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다. ③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라. ⑤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비과세 종교인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은 제외합니다.
- 마.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 바. 가산세(⑥·⑩)란에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 예) 임대·인적용역·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①)과 환급세액 조정(②)

- 가. 소득지급(④·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과 총인원을 적고, 퇴직·기타·연금소득의 연금계좌란은 연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그 외는 연금계좌 외로 지급되는 금액을 적음). 다만, 총지급액은 근로소득(A02, A04) 퇴직소득(A20), 사업소득(A26), 기타소득(A44)의 경우에는 주(현), 종(전) 근무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나. 징수세액(⑥~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A99의 ⑥~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A99의 ⑥~⑩)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

작성방법 (2)

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납신청(A05)은 분납할 인원(④), 징수세액(⑥~⑧)만 기재, 징수세액란은 $A04 = A05 + A06$ 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1) 인원(④), 총지급액(⑤)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4)$, 징수세액(⑥~⑧)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6)$

※ 3월 신고분 분납신청(A05) = 4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5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연금소득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A30, A40, 또는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⑥~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⑪)란에 옮겨 적습니다.

2) 징수세액(⑥~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3) 징수세액(⑥~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⑮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 [A10, A20, ...]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⑪)란에 적습니다.

나)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⑮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납부세액(⑩·⑪)란에 적지 아니하며,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조정환급 명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지 않고 임의 조정하여 총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다)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⑨]은 ⑲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4) ⑰ 그 밖의 환급세액란은 금융회사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금융회사 등"란에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합병 등"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합병 등"란에 피합병법인 및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적은 경우에는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서(제10쪽)를 제출해야 합니다.

5)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받으려는 금액을 ㉑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마. 저축 등 해지 추정세액 등(A69)란은 이 서식 부표의 [C41, C42, C43, C44, C45, C46]의 합계를 적습니다.

바. 납부세액의 납부서는 신고서·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4. 반기별 신고·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가. 인원

1) 간이세액(A01): 반기(6개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2) 중도퇴사(A02):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3) 일용근로(A03):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 인원을 적습니다.

4) 사업(A25)·기타소득(A4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5) 퇴직(A20)·이자(A50)·배당(A60)·및 법인원천(A8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나. 지급액: 신고·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1월 신고·납부: 귀속월 201X년 7월, 지급월 201X년 12월, 제출일 201X년 1월

2) 7월 신고·납부: 귀속월 201X년 1월, 지급월 201X년 6월, 제출일 201X년 7월

라.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예) 2010년 4월 반기납 포기: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10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10년 4월)을 적습니다.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① 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처음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추가지급 등에 의한 신고는 귀속연월을 정확히 적어 정상신고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간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않으며, 그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환급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 환급 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거주자 (개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C01								
			비과세종합저축	C02								
			개인연금저축	C03								
			장기저축성보험차익	C05								
			조합 등 예탁금	C06								
			조합 등 출자금	C0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C08								
			우리사주 배당소득	C10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20								
			영농·영여조합법인 배당소득	C23								
			재형저축 이자·배당소득	C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배당소득	C6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C27								
			장병내일준비적금	C31								
			기타 비과세이자소득	C19								
			기타 비과세배당소득	C29								
		세금 특례	기타 이자·배당소득	C11								
			영농·영여조합법인 배당소득	C54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55								
			부동산집합투자기 구 등 집합투자 증권의 배당소득	C56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배당소득	C57								
		세금 우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배당소득	C93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의 배당소득	C94								
			이자소득(9%)	C12								
			배당소득(9%)	C22								
	일반 세율 (14%) 분리 과세	일반 과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9%)	C95								
			기타 분리과세 이자소득	C13								
		일반 과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C18								
			부동산집합투자기 구 등 집합투자 증권의 배당소득	C58								
			기타 분리과세 배당소득	C39								
		고배당 기업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C96								
			이자소득	C14								
		비실명 소득	배당소득	C24								
			배당소득(9%)	C91								
		비실명 소득	배당소득(25%)	C92								
			비실명이자소득	C15								
	금융 투자 소득	비과세 소득	비실명배당소득	C25								
			비영업대금이익 (25%)	C16								
			출자공동사업자(25%)	C26								
			이자·배당소득 계	C30								
		분리 과세	비과세종합저축	C32								
			재형저축	C3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C34								
			기타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C47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C35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C36								
			9% 세금우대종합저축	C3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C78								
		일반과세	14% 투융자집합투자기구	C38								
			일반과세	C79								
	해지 추징 세액	금 회 회 회	금융투자소득 계	C8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도해지 등 추징세액	C97								
		금 회 회 회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59								
			벤처기업투자신탁	3.5% C41								
		금 회 회 회	장기주택마련저축	4.8% C42								
			연금저축	2% C43								
		금 회 회 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2% C44								
			주택청약종합저축	6% C45								
		금 회 회 회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6% C46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6% C48								
		금 회 회 회	해지추징 계	C5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 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비 거 주 자 (개 인)	이자		제한, 20%	C61							
	배당		제한, 20%	C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C63							
		인적용역	20%, 3%	C64							
		사용료	제한, 20%	C65							
	양도	유가증권 양도	10%, 20%	C66							
		부동산 양도	10%, 20%	C67							
	기타	가상자산	10%, 20%	C77							
		인적용역	20%	C98							
		그 외	20%	C68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69							
	비거주자 계			C70							
법 인 원 천 전	내국 법인	이자	14%	C71							
		투자신탁의 이익	14%	C72							
		신탁재산 분배	14%	C73							
		신탁업자 징수분	14%	C7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C75							
		비과세 소득 등		C76							
	외국 법인 (국내 원천 소득)	이자	제한, 20%	C81							
		배당	제한, 20%	C82							
		선박 등 임대, 사업	2%	C83							
		인적용역	20%, 3%	C84							
		사용료	제한, 20%	C85							
		유가증권양도	10%, 20%	C86							
		부동산 양도	10%, 20%	C87							
	기타	가상자산	10%, 20%	C89							
		가상자산 외	20%	C88							
	법인세 계			C9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근로소득(A01, A02, A03, A04, 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기타소득 중 가상자산소득(A49),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금융투자소득(A71),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명세(④ ~ ⑥) 및 납부세액(⑩・⑪),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A25, A26,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 ◇ 이 서식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내용도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C01-C10, C20, C23, C27, C31, C40, C60] :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농어기목돈마련저축, 우리사주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비과세 이자·배당소득과 「소득세법」의 저축성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은 비과세 보험차익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해당 저축상품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C19, C29]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저축상품([C01-C10, C20, C23, C28, C40] 란 작성대상 저축상품 제외)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 [C11, C54, C55, C56, C57, C93, C94]는 장기채권 (30%), 「조세특례제한법」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등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 [C12, C22, C95]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 [C13, C18, C39, C58]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직장공제회초과 반환금(기본세율)으로 분리과세 해당되는 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 [C14, C24]는 일반세율(22%, 20%, 15%, 14% 등)이 적용되고, 거주자에 지급하는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 [C15, C25]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세율이 적용되는 비실명 거래분과 「소득세법」에 따라 비실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 [C16]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 [C26]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 [C30]은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합계액을 적으며 C30, C61, C62의 합계액과 A50, A60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C59], [C69] 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A01, A02, A03, A04, A10) 중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 명세를 적습니다.
- [C41](벤처기업투자신탁)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추정하는 해지 추정세액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정하는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 [C42](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정하는 해지 추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 [C43](연금저축해지가산세)란은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회사 등이 추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근로소득)를 적으며, 저축납입계약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쪽) [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연금소득은 (제1쪽) [A45](연금소득 매월징수)란에만 적습니다.
- [C44](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가산세)란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근로소득)를 적으며, 공제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제1쪽)[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 [C45](주택청약종합저축추징세액)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정하는 해지 추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 [C4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정하는 해지 추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 [C48](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추징세액)란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3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정하는 해지 추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정하는 배당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C50]란은 저축 등 해지 추정세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추정세액은 근로소득으로 납부합니다.
- [C61-C70, C77, C98](비거주자)란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으며, 신고서 제1쪽의 해당 소득 [A25], [A40], [A50], [A60], [A69], [A70]란에 각각 적습니다.
- [C71](이자)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일반세율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 [C73](신탁재산 분배)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습니다.
- [C74](신탁업자 징수분)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명세는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에 적습니다.
- [C75](비영업대금의 이익)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 [C76](비과세법인소득)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과세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C81-C89]란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 [C90](법인세계)란은 법인(외국법인 포함)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적습니다. [법인원천(A80)=법인세 계(C90)]
- [C32, C33, C34, C47]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으로부터 발생한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의 소득지급 인원과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 [C35, C36, C37, C78]란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분리과세(9%) 적용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세금우대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발생하여 지급한 금융투자소득을 [C38]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분리과세(14%) 적용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을 소득지급 인원과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 [C79]란은 일반세율(20%)이 적용되고, 금융투자소득의 소득지급 인원과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C80]란은 금융투자소득 총지급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A71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C97]란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융투자소득세액을 적습니다.

- ◇ 채권 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의 경우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채권과세 특례의 경우 비거주자는 [C61]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적고,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작성 방법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업자등록번호 □□□-□□-□□□□□□

기 납 부 세 액 명 세 서

(단위: 원)

①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소득의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① 소득세 등	②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합 계								

②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소득의 구분	성명	주민등 록번호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계	
			③ 소득 세 등	④ 농어촌 특별세	종(전) 근무지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합 계										

③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사 유
① 소득세 등 합계	③ 소득세 등 합계	차이금액 (③ - ①)	② 농어촌특 별세 합계	④ 농어촌특별 세 합계	차이금액 (④ - ②)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 대해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 대하여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을 작성해야 합니다.
6.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은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과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을 비교하여 작성하여 차이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명확히 적고 적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단위: 원)

귀속연월	지급연월	신고구분	세목 및 코드	① 발생환급 세액	② 같은 세목의 납부할세액	③ 당월발생 환급세액 (① - ②)

[illegible]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는 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1. 환급 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는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최초 발생 시의 명세를 적습니다. 신고구분란에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발생 사유를 연말정산, 수정신고 등 해당되는 사유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세목 및 코드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세목 및 해당 세목의 코드를 적습니다.
4. [2. 환급세액 조정현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란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⑦ 당월발생환급세액란에는 [1. 환급 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의 ③ 당월발생금세액을 적습니다. ⑩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은 환급 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13 –

사업자등록번호 □□□-□□-□□□□□□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

(단위: 원)

승계대상 사업자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근거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일자	근거	귀속연월	지급연월	차월이월 환급세액
합 계						

작성 방법

1. 합병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으로 인해 피합병법인 또는 지점 등의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합병법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본점(또는 주사무소)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승계대상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란은 피합병법인 및 지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란은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가 발생한 일자와 근거(코드)를 적습니다.

승계근거	합병	사업자단위과세전환	그 밖의 원인
코드	1	2	3

4.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란은 승계할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 ③ 지급연월, ④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착오 또는 거짓으로 적은 경우 과소납부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리번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① 귀속 연도	년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소득자	⑦ 상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소재지														
	⑩ 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 주소														
수입금액	⑬ 발생처구분	⑭ 법인명(상호)	⑮ 사업자등록번호				⑯ 발생기간(연·월·일)				⑰ 지급액(수입금액)				
	주(현)				-		-								
	종(전)				-		-								
	사업별 수입금액 계		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음료배달 수입금액 계													
		합 계 (124)													
소득금액	사업별	⑱ 수입금액(⑰)	⑲ 적용소득률		⑳ 소득금액				㉑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 계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124)합계															
㉒ 사업소득금액(㉑)				㉓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공제	㉔ 본인			㉕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㉖ 결정세액						
		㉗ 배우자			㉘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㉙ 부양가족(명)			㉚ 소득공제 등 종합합산도 초과액				가납부세액		㉛ 중(전)근무지				
	추가공제	㉜ 경로우대(명)			㉝ 종합소득과세표준						㉞ 주(현)근무지				
		㉟ 장애인(명)			㊱ 산출세액				㊲ 차감납부할세액						
		㊳ 부녀자			㊴ 공제대상자녀(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㊵ 한부모가족			㊶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자(명)											
㊷ 연금보험료공제				㊸ 연금계좌 세액공제											
㊹ 기부금(이월분)				㊺ 정치자금기부금											
				㊻ 고향사랑기부금											
㊼ 종합소득공제 계				㊽ 특례기부금											
				㊾ 우리사주조합											
㊿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 일반기부금											
				㋁ 표준세액공제											
㉑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작성 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㉔ 차감 납부할 세액"란이 소액 부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5.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6. 해당 소득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번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② 종교단체명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고유)번호								
의무자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소득자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소														
종교인 소득	⑩ 발생처 구분	⑪ 종교 단체명	⑫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⑬ 발생기간 (연·월·일)					⑭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⑮ 비과세소 득	
	주(현)					-							· · · ~ · ·		
	종(전)					-							· · · ~ · ·		
소득 금액	⑯ 종교인소득(⑭)					⑰ 필요경비					⑱ 소득금액(⑯-⑰)				
⑲ 종교인소득 소득금액 (⑱)															
인 적 공 제	기 본 공 제	⑳ 본 인	㉓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㉔ 결정세액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계		
		㉕ 배우자	㉔ 종합소득과세표준					가납부 세액	㉕ 종(전) 근무지						
		㉖ 부양가족 (명)							㉕ 산출세액					㉖ 주(현) 근무지	
		㉗ 경로우대 (명)	㉖ 자녀 세액 공제 공제대상자(명) 출산·입양자(명)					㉗ 차감 납부할 세액							
		㉘ 장애인 (명)								㉗ 연금계좌 세액공제					
		㉙ 부녀자	㉘ 기 부금 세액 공제												
	㉚ 한부모가족	㉙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일반기부금													
	㉚ 연금보험료공제						㉙ 표준세액공제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㉛ 기부금(이월분)		㉚ 외국인납부세액공제													
㉜ 종합소득공제 계															
㉝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㉞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㉟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㉟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제청홈페이지→국제정보→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⑭ 지급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5. "⑮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6. "⑬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은 종교인소득 소득·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2)) 제2쪽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의 "조합 등"란의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7. ⑬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서식 제2쪽의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8. "④ 차감 납부할 세액"란이 소액 부장수(1천원 미만)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9.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기부금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인적사항	① 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② 해당 연도 기부 명세

⑦ 코드	⑧ 기부내용	기 부 처		⑪ 기부자			건수	기부 명세			
		⑨ 상호 (법인명)	⑩ 사업자 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기부금액			
								⑫ 합계 (⑬+⑭)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	공제제외 기부금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⑮ 기타	

③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분	총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제외 기부금	
		특례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코드		10	20	43	40	41	42	10, 40, 41	50
합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④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⑫ 기부금액	⑬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⑭ 공제대상 금액(⑫-⑬)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세액(소득) 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⑤ 노동조합 회비 명세

⑦ 코드	⑪ 기부자			⑫ 노동조합		⑬ 적정공시 노동조합 회비 납부액		⑭ 비적정공시 노동조합 회비 납부액	
	관계 코드	성명	주민등록 번호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등	1월~9월 납부액 (공제대상)	10월~12월 납부액 (공제대상)	1월~9월 납부액 (공제대상)	10월~12월 납부액 (공제제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 기부금을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⑦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도 아래의 기부금 유형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가. 특례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10"
 - 나.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20"
 - 다.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43"
 - 라.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코드번호 "40"
 - 마.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번호 "41"
 -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번호 "42"
 - 사.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 외 기타", 코드번호 "50"
2. ⑧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⑨ 상호(법인명)란: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⑨ 상호(법인명)란과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습니다. ⑫ 기부 명세 합계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⑪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⑬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3" "40" ~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1", "4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⑮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0. "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는 "2. 해당 연도 기부 명세"의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손급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급에 산입합니다.
(2013년 이후 기부금부터)

구 분	특례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코 드	10	20	43	42	40	41
이월공제가능기간	10년	-	-	-	10년	10년

12.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 가.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 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 다.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⑮ 기부금액,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금액 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라.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순서로 공제하고, 일반기부금에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 바. 2013.12.31. 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우선하여 공제하며,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사. 이월기부금 공제 후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3. '5. 노동조합 회비 명세' 작성 방법
 - 가. ⑲ 노동조합 란: 회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나. ⑳ 적정공시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란: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금액을 1월~9월 납부액과 10월~12월 납부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다. ㉑ 비적정공시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란: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금액을 1월~9월 납부액과 10월~12월 납부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관리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table border="1"> <tr> <td colspan="2">거주구분</td> <td colspan="2">거주자1/비거주자2</td> </tr> <tr> <td>거주지국</td> <td></td> <td>거주지국코드</td> <td></td> </tr> <tr> <td colspan="2">내·외국인</td> <td colspan="2">내국인1 / 외국인9</td> </tr> <tr> <td colspan="2">외국인단일세율적용</td> <td colspan="2">여 1 / 부 2</td> </tr> <tr> <td colspan="2">외국납소득 파견근로자 여부</td> <td colspan="2">여 1 / 부 2</td> </tr> <tr> <td colspan="2">종교관련종사자 여부</td> <td colspan="2">여 1 / 부 2</td> </tr> <tr> <td>국적</td> <td></td> <td>국적코드</td> <td></td> </tr> <tr> <td colspan="2">세대주 여부</td> <td colspan="2">세대주1, 세대원2</td> </tr> <tr> <td colspan="2">연말정산 구분</td> <td colspan="2">계속근로1, 중도퇴사2</td> </tr> </table>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납소득 파견근로자 여부		여 1 / 부 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납소득 파견근로자 여부		여 1 / 부 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1 / 부2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⑤ 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외국인등록번호)																																									
	⑧ 주 소																																												
I 근무처별 소득명세	구 분		주(현)	총(전)	총(전)	⑩-1 납세조합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직무발명보상금																																												
	⑯ 계																																												
II 비과세및감면 소득명세	⑰ 국외근로		MOX																																										
	⑰-1 야간근로수당		O0X																																										
	⑰-2 출산·보육수당		Q0X																																										
	⑰-4 연구보조비		H0X																																										
	⑰-5																																												
	⑰-6																																												
	~																																												
	⑰-40 비과세식대		P01																																										
	⑱ 수련보조수당		Y22																																										
	⑳ 비과세소득 계																																												
	㉑-1 감면소득 계																																												
III 세액명세	구 분			㉔ 소 득 세	㉕ 지방소득세	㉖ 농어촌특별세																																							
	㉓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액	㉔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㉕ 주(현)근무지																																											
	㉖ 납부특례세액																																												
	㉗ 차 감 징 수 세 액 (㉓-㉔-㉕-㉖)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세 무 서 장 귀하			징수(보고)의무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IV 정 산 명 세	②① 총급여(①⑥,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시 연간 근로소득)			④⑨ 종합소득 과세표준				
	②② 근로소득공제			⑤⑩ 산출세액				
	②③ 근로소득금액			⑤① 「소득세법」				
	기본공제	②④ 본 인		⑤② 「조세특례제한법」(⑤③ 제외)				
		②⑤ 배 우 자		⑤③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②⑥ 부 양 가 족(명)		⑤④ 조세조약				
	추가공제	②⑦ 경 로 우 대(명)		⑤⑤ 세 액 감 면 계				
		②⑧ 장 애 인(명)						
		②⑨ 부 녀 자						
		③⑩ 한 부 모 가 족						
	연금 보험료 공제	③① 국민연금보험료		대상금액				
				공제금액				
		③② 공 연 보 험 료 공 제	㉓ 공무원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㉔ 군인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㉕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㉖ 별정우체국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③③ 보 험 료	㉗ 건강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포함)		대상금액			
					공제금액			
	㉘ 고용보험료		대상금액					
			공제금액					
	특 별 소 득 공 제	㉙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거주자				
		③④ 주 택 자 금	㉚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15년~29년			
					30년 이상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그 밖의 대출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 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그 밖의 대출		
						10년~15년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③⑤ 기부금(이월분)						
	③⑥ 계							
	③⑦ 차 감 소 득 금 액							
	그 밖 의 소 득 공 제	③⑧ 개인연금저축						
		③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④⑩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	㉓ 청약저축					
			㉔ 주택청약종합저축					
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④① 투자조합출자 등								
④② 신용카드등 사용액								
④③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④④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④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④⑥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④⑦ 그 밖의 소득공제 계								
④⑧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④⑨ 결 정 세 액(⑤①-⑤⑤-⑦①)					
			⑧② 실효세율(%) (⑦②/②①)×100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출산 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 자	한부 모	장 애 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 임	65세이상·장애인 건강보험산정 특례자	실손 의료 보험금	일반	장애인 특수교육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 계																
						기타 계																
0	(근로자 본인)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자료 구분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				대중교통 이용분	기부금												
					도서공연등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사용분																
					1~3월	4~12월	1~3월	4~12월														
국세청 계																						
기타 계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작성 방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거주지코드와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제전화번호→국제정책/제도→국제조세정보→참고자료실→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 KR, 미국 : US
-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제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③-1에서 여1을 선택하고, ③-2에 소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용 항목이 많은 경우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의 "㉑ 비과세소득 계"란 및 "㉒-1 감면세액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 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주(현)란]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㉓-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 「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㉔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존속 법인 등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중(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하여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중(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㉕ 총급여"란에는 "㉓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서식에서 "조특법"이라 합니다)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㉓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㉖~㉗)"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㉘~㉙)"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 "연금계좌(㉚~㉛-1)"란과 "특별세액공제(㉜~㉝)"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작성 방법

10. ㉔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㉓ 주택자금공제(㉗+㉔), ㉓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㉗+㉔+㉔), ㉔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 ㉔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액, 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액, 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액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
11. ㉔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㉓ 차감소득금액에서 ㉔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㉔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㉔ 납부특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3. 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은 해당 파견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18. 6. 30.이전 17%, 2018. 7. 1.이후 19%)에 총 파견근로자의 결정세액 합계에 대한 각 파견근로자별 결정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14.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㉔실효세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만으로 표시하고 그 외는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㉔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15. "㉔ 소득·세액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득세법 §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입양자) (소득세법 §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 50 ① 3 마)	8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포함하되 코드 4는 제외합니다.

※ 관계코드 4~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0"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타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란: 소득·세액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액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사. 의료비(일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 65세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적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적습니다)

16. 해당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7. 해당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8. ㉔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에서 "소득령"이라 합니다) 제112조제10항제5호가 해당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9. ㉔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시 인적공제 항목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구분	코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와 그 유가족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그 밖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3

20.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이하 이 서식에서 "도서·공연등 사용분"이라 합니다)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되 도서·공연등 사용분이 전통시장 사용분에도 해당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공제 받습니다(신문 사용분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2.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득세법 § 12 3 가	A01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나	B01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세법 § 12 3 라	D01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득세법 § 12 3 마	E01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득세법 § 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득세법 § 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세법 § 12 3 아	G01	⑬-5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 11)	○
	소득세법 § 12 3 자	H02		소득령 § 12 2 ~ 3(일직료·숙직료 등)	×
		H03		소득령 § 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득령 § 12 4, 8(법령에 따라 적용하는 제복 등)	×
		H05	⑬-18	소득령 § 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⑬-4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⑬-4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H08	⑬-4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H09	⑬-4	소득령 § 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H10	⑬-4	소득령 § 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H14	⑬-22	소득령 § 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H15	⑬-23	소득령 § 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H11	⑬-6	소득령 § 12 14 (취재수당)	○
		H12	⑬-7	소득령 § 12 15 (벽지수당)	○
		H13	⑬-8	소득령 § 12 16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H16	⑬-24	소득령 § 12 17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H17	⑬-30	소득령 § 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및 물품)	○
	소득세법 § 12 3 차	I01	⑬-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득세법 § 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득세법 § 12 3 파	K01	⑬-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하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소득세법 § 12 3 거	M01	⑬	소득령 § 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M02	⑬	소득령 § 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
		M03	⑬	소득령 § 16①2(국외근로)	○
	소득세법 § 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 § 12 3 더	O01	⑬-1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득세법 § 12 3 러	P01	⑬-40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득세법 § 12 3 머	Q01	⑬-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
	소득세법 § 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득세법 § 12 3 서	R10	⑬-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득세법 § 12 3 어	R11	⑬-29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소득세법 § 12 3 저	V01		사택 제공 이익	×
		V02		주택 자금 저리·무상 대여 이익	×
		V03		종업원 등을 수익자로하는 보험료·신탁부금·공제부금	×
		V04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연 240만원 이내)	×
	구 조특법 § 15	S01	⑬-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 § 16의2	U01	⑬-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조특법 § 88의4⑥	Y02	⑬-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⑬-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Y04	⑬-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소득세법 § 12 3 자	Y22	⑬	소득령 § 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감면	조특법 § 18	T01	⑬-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50%)	○
		T02	⑬-36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70%)	○
	조특법 § 19	T30	⑬-3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특법 § 29조의6	T40	⑬-3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50%)	○
		T41	⑬-37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30%)	○
		T42	⑬-38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청년 90%)	○
		T43	⑬-39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청년 50%)	○
		T50	⑬-35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조특법 § 30	T12	⑬-2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	○
		T13	⑬-3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90%)	○
	조세조약	T20	⑬-28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교수)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 납입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 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 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 금액	
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투자연도	투자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가입일	계약기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성 방법

-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연금 구분"란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계약기간"란은 계약기간을 개월 수로 적습니다(월수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합니다).
-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 여부 []여, []부]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	⑪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⑫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⑳ 공제금액
				㉑ 계	㉒ 원금	㉓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㉔ 임대인 성명 (상 호)	㉕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㉖ 유형	㉗ 계약 면적(㎡)	㉘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㉙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㉚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㉖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㉙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작성 방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소득·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㉖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㉚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관리 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자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징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
	⑧ 주 소	

I 근무처별 소득명세	구 분	국 내	국 외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⑫ 감면기간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⑯ 계				

II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⑱ 국외근로	MOX			
	⑱-1 야간근로수당	00X			
	⑱-2 출산·보육수당	Q0X			
	⑱-4 연구보조비	H0X			
	⑱-5				
	⑱-6				
	~				
	⑱-39				
	⑲ 수련보조수당	Y22			
	⑳ 비과세소득 계				
	㉑-1 감면소득 계				

III 세액 계산	㉒ 근로소득		차 감 납 부 세 액		
	㉓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㉔ 소 득 세		
	세액 공제	㉕ 외국납부		㉕ 지방소득세	
		㉖ 납세조합 [(㉓-㉕) × 5/100]		㉖ 농어촌특별세	
		㉗ 납부특례세액			

위의 납부 세액을 영수합니다.

납세조합

세 무 서 장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간 이 지 급 명 세 서

(거 주 자 의 사 업 소 득)

([] 지 급 자 보 관 용 [] 지 급 자 제 출 용)

① 지급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상호 (법인명, 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 소)	④ 소득인원	⑤ 총지급액 (⑭번 합계)

⑥ 지급연도

⑦ 지급월
(해당 월에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사업소득 내용

일련 번호	⑧ 귀속 연도	⑨ 귀속 월	⑩ 업종 구분	⑪ 소득자 성명(상호)	⑫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⑬ 외국인 여부 (외국인 "○")	⑭ 지급액	⑮ 세율	⑯ 소득세	⑰ 지방 소득세	⑱ 계 (⑯+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지급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급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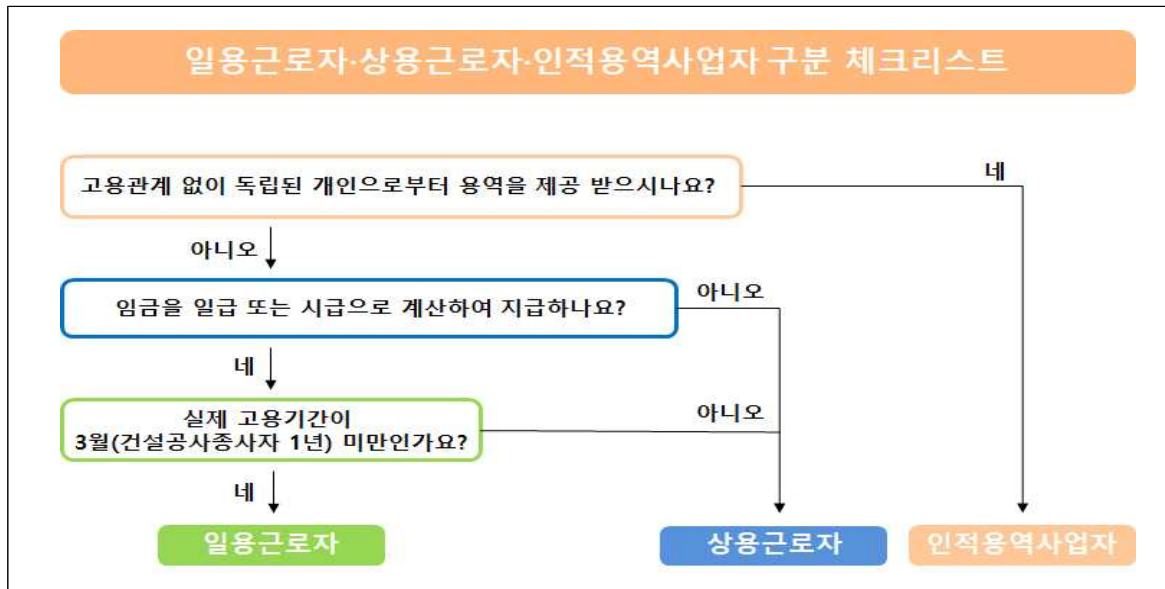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인터넷을 이용한 홈택스(www.hometax.go.kr), 스마트폰 손택스(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포함)을 지급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미만 거소를 둔 개인)인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한 소득은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지급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서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 ⑥ 지급연도란은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연도를 적습니다.
 - ⑦ 지급월란은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월에 “○”를 표시합니다.
 - 나. ⑧ 귀속연도란 ⑨ 귀속월란은 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 다만, 해당 귀속연도의 사업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예: 2022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다음 연도 2023년 1월에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2022년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2023년 1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그 외 사업소득」은 2023년 1월 지급분으로 2월 말일까지 제출)
 - 다. ⑩ 업종구분란은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번호(3쪽 참조)를 적습니다.
 - 라. ⑪ ~ ⑫란은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가 병의원(851101)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 마. ⑬ 외국인 여부란은 소득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하고 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 바. ⑭ 지급액란에는 소득자를 기준으로 해당 월에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건별 소액부징수(⑮ 소득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되는 지급액도 적어 제출합니다.
 - 사. ⑮ 세율란에는 3%를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 봉사료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를 적습니다.
 - 아. ⑯ 소득세란은 ⑭ 지급액과 ⑮ 세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자. ⑰ 지방소득세란은 ⑯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작성 방법

□ 업종코드번호

종목	업종 코드	적용범위	종목	업종 코드	적용범위
가수	940304	가수	자문·고문	940600	자문, 감독, 지도료,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등
성악가 등	940305	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가,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	바둑기사	940901	바둑기사
작곡가	940301	작곡·작사가, 편곡가, 각색영화편집	꽃꽂이교사	940902	꽃꽂이, 무용, 음악, 사교댄스 및 요리교사
저술가/작가	940100	학술·문예에 관한 번역수입금액 포함	학원강사	940903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단사
화가관련 예술가	940200	회화, 서예가, 조각가, 만화가, 삽화가, 도예가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내용 지도
배우	940302	탤런트, 성우, MC, 코미디언, 개그맨, 만담가	교육교구 방문강사	940921	유아/아동에게 학습지가 아닌 교재/교구를 활용지도
모델	940303	탤런트, 배우 등의 광고모델수입 포함	방과후강사	940925	학교 정기수업 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종사
연예보조	940500	연예보조출연자, 조명, 촬영, 장치, 녹음, 분장 등	대리운전	940913	대리운전용역을 직접 제공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940306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퀵서비스	940918	퀵서비스배달원, 배달대행업체배달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940926	소프트웨어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심부름용역	940917	심부름센터, 말벗서비스
기타 모집수당	940911	증권매입권유, 저축권장 분양알선, 모집알선, 채권회수수당	물품운반	940919	의류(직물)운반, 이삿짐운반, 짐운반원
대출모집인	940923	대출관련 업무수행 (금융회사, 대출모집법인)	캐디	940914	골프장 경기자의 보조용역수행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40924	신용카드발급 관련 업무수행	직업운동가	940904	운동지도가, 역사(심판포함), 경륜·경정선수, 기수, 경기기록원, 감독 등 포함
음료배달	940907	우유배달판매, 요구르트배달판매	보험설계사	940906	보험가입자의 모집 등 활동
방문판매원	940908	서적외판원, 학습자·화장품· 정수기·자동차 등 방문판매	대여제품 방문점점원	940922	가정/사무실 등 방문하여 대여제품의 정기 점검활동
중고자동차 판매원	940929	중고자동차의 매입과 알선 및 판매	관광통역 안내사	940927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 안내
다단계판매	940910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940928	어린이(13세미만) 통학버스를 운전
간병인	940912	개인간병, 방문간호, 파출간병인서비스 등	봉사료수취자	940905	유형접객원, 댄서
목욕관리사	940915	목욕관리사	병의원	851101	요양병원, 정신병원, 병원급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행사도우미	940916	상품 및 시설의 장점, 기능 등 홍보	기타자영업	940909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업종

※ 기타자영업 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위 표에서 기타자영업을 제외한 39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제외), 전기·가스검침원 등]인 경우 적습니다.

※ 업종코드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소득자의 소득세가 **잘못** 계산되거나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 또는 착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 이 지 급 명 세 서 부 표
(거 주 자 의 사 업 소 득)
([] 지 급 자 보 관 용 [] 지 급 자 제 출 용)

⑥ 지급연도	⑦ 지급월							
	(해당 월에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사업소득 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일련 번호	⑧ 귀속 연도	⑨ 귀속 월	⑩ 업종 구분	⑪ 소득자 성명(상호)	⑫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⑬ 외국인 여부 (외국인 "○")	⑭ 지급액	⑮ 세율	⑯ 소득세	⑰ 지방 소득세	⑱ 계 (⑯+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소득자가 많아서 제1쪽의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사업소득 내용」 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간 이 지 급 명 세 서

(거 주 자 의 기 타 소 득)

([] 지 급 자 보 관 용 [] 지 급 자 제 출 용)

① 지급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상호 (법인명, 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 소)	④ 소득인원	⑤ 총지급액 (⑮번 합계)

⑥ 지급연도	⑦ 지급월 (해당 월에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기타소득 내용														
일련 번호	⑧ 귀속 연도	⑨ 귀속 월	⑩ 소득 구분	⑪ 소득자 성명(상호)	⑫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⑬ 외국인 여부 (외국인 “○”)	⑭ 지급 건수	⑮ 지급액	⑯ 필요 경비	⑰ 소득 금액	⑱ 세율	⑲ 소득세	⑳ 지방 소득세	㉑ 계 (⑲+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지급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급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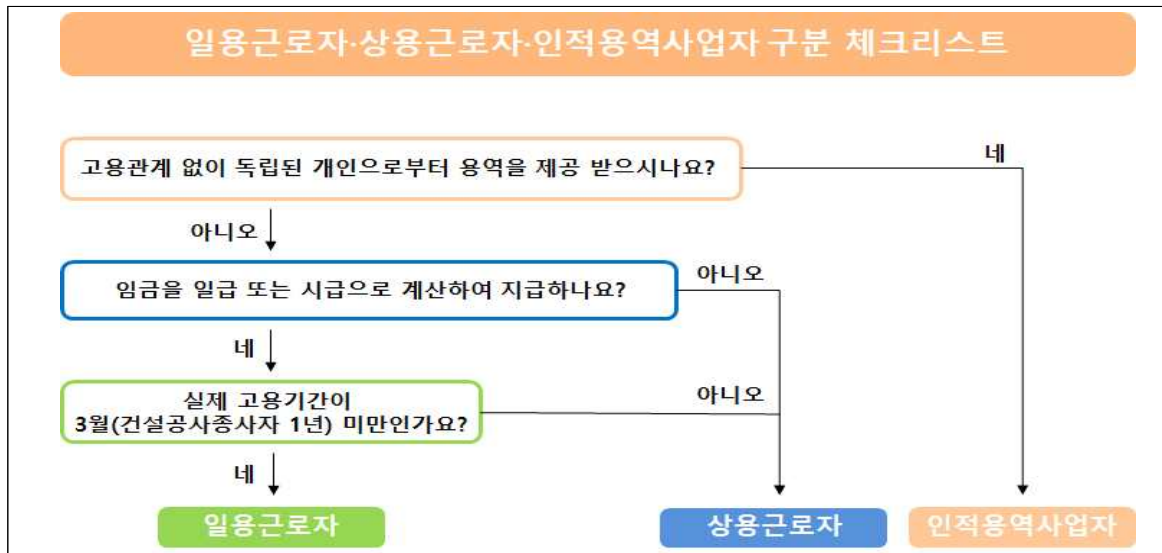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서식작성에 관한 설명은 뒷면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인터넷을 이용한 홈택스(www.hometax.go.kr), 스마트폰 손택스(앱)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에게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예: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영리목적의 독립적이고 계속·반복적 소득(예: 학원강사, 전문 컨설턴트)에 대해서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작성합니다.



2. 지급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이 서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 가. ⑥ 지급연도란은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연도를 적습니다.
 - ⑦ 지급월란은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월에 “○”를 표시합니다.
 - 나. ⑧ 귀속연도란 ⑨ 귀속월란은 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다. ⑩ 소득구분란은 아래의 소득구분표에서 해당하는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코드	소득구분
7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자문료 및 고문료를 제외함)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79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⑪ ~ ⑫란은 소득자의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마. ⑬ 외국인 여부란은 소득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하고 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 바. ⑮ 지급액란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해당 월에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건별 소액부징수(⑮ 소득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되는 지급액도 적어 제출합니다]
- 사. ⑯ 필요경비란은 ⑮ 지급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100분의 60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적습니다.
- 아. ⑰ 소득금액란은 ⑮ 지급액에서 ⑯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 자. ⑱ 세율란은 20%를 적습니다.
- 차. ⑲ 소득세란은 ⑰ 소득금액과 ⑱ 세율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카. ⑳ 지방소득세란은 ⑲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간 이 지 급 명 세 서 부 표
(거 주 자 의 기 타 소 득)
([] 지 급 자 보 관 용 [] 지 급 자 제 출 용)

⑥ 지급연도	⑦ 지급월 (해당 월에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	--------	--------	--------	--------	--------	--------	---------	---------	---------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기타소득 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일련 번호	⑧ 귀속 연도	⑨ 귀속 월	⑩ 소득 구분	⑪ 소득자 성명(상호)	⑫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⑬ 외국인 여부 (외국인 "○")	⑭ 지급 건수	⑮ 지급액	⑯ 필요 경비	⑰ 소득 금액	⑱ 세율	⑲ 소득세	⑳ 지방 소득세	㉑ 계 (⑲+⑳)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소득자가 많아서 제1쪽의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기타 소득내용」 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관리번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제출자 보관용 [] 제출자 보고용)

※ 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1. 제출자 인적사항 및 총 제출 인원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			④ 총 제출 인원											
⑤ 귀속연도	년	⑥ 귀속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 자료내용

일련 번호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내·외국인 (외국인 “○”)	⑩ 용역구분	용역제공기간			⑭ 용역제공대가
					⑪ 개시일	⑫ 종료일	⑬ 용역제공 일수(횟수)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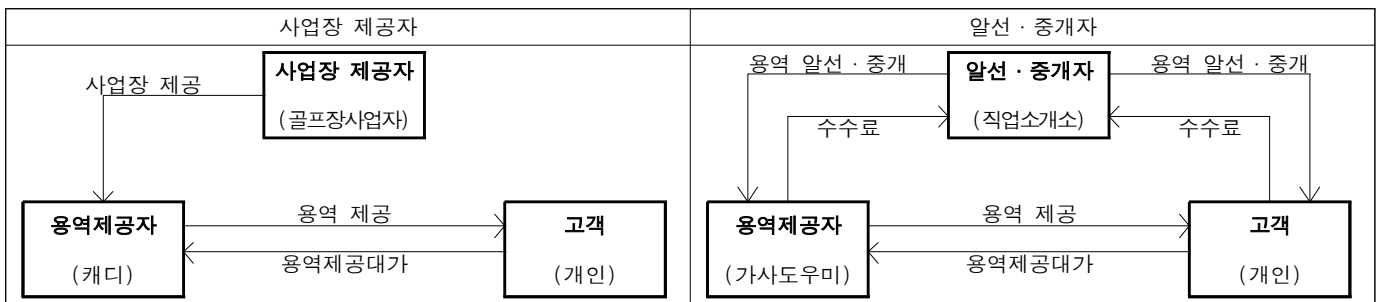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대리운전, 소포배달(퀵서비스) 등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장을 제공받거나 용역을 알선·중개받아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사업장 제공자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해당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가. 용역제공자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대리운전, 소포배달(퀵서비스), 간병, 골프장경기보조, 파출, 수하물운반, 중고자동차판매, 욕실중사, 스포츠강습 등 9개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 나. 사업장 제공자란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다. 알선·중개하는 자란 직업소개업자 등 제3자의 위치에서 계약의 성립을 위해 용역제공자와 최종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제77조의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해당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로 봅니다.

< 예시: 제출자 유형 >



- ④ 총 제출 인원란은 일련번호가 부여된 총 인원을 적습니다. 이 경우 일련번호란의 마지막 번호와 총 제출 인원의 숫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 ⑥ 귀속월란은 용역의 제공으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날(용역제공자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또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에 “√”를 표시합니다.
※ 예를 들면, 1) 1월에 용역을 제공하고 2월에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귀속월은 1월입니다.
2) 1~2월에 용역을 제공하고 3월까지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1월에 제공한 용역의 귀속월은 1월이고, 2월에 제공한 용역의 귀속월은 2월입니다.
- ⑨ 내·외국인란에는 해당 용역제공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하고 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 ⑩ 용역구분란은 아래 용역구분코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용역구분 코드	골프장 경기보조	간병	대리운전	소포배달 (퀵서비스)	파출용역	수하물 운반	중고자동차 판매	욕실중사	스포츠강습
	11	12	13	14	15	16	17	18	19

* 업무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정의를 따릅니다.

골프장 경기보조(11):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을 위해 골프백이나 골프기구를 정리하고, 거리에 따라 알맞은 골프기구를 선정해주고, 골프 코스나 골프장의 지형지물에 대해 조언하고 골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간병(12): 병원, 요양소, 기타 관련기관 및 가정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대리운전(13): 자가용 운전자를 대리하여 목적지까지 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소포배달(퀵서비스)(14):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의뢰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지정된 수령자에게 물품을 배달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파출용역(15): 고용된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사노동을 수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수하물운반(16):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중고자동차판매(17): 중고차의 매입과 알선 및 판매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욕실중사(18): 손님이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며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안마, 미용서비스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스포츠강습(19): 체조 및 기타 연습방법으로 피훈련자의 신체적 적응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하거나, 특수운동에 대비해서 신체적인 훈련과정을 계획하고 필요한 훈련을 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 용역제공기간란 중 “⑪ 개시일”은 해당 월 중 처음으로 용역을 제공한 날을, “⑫ 종료일”은 해당 월 중 마지막으로 용역을 제공한 날을, “⑬ 용역제공일수(횟수)”는 ⑪ 개시일과 ⑫ 종료일 기간 중 용역을 제공한 일수를 적고, 괄호 안에 용역을 제공한 월간 총 횟수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1일부터 3일까지 대리운전 용역을 10회 제공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일수(횟수)란에 “3(10)”를 기재합니다.

- ⑭ 용역제공대가란은 용역제공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한 용역제공대가의 월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때 알선수수료를 기재하거나 용역제공대가에서 알선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의무자가 용역제공자와 관련된 전산자료, 증빙자료 등으로도 용역 제공대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대가를 적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

연번	노동조합 명칭	노동조합 소재지	전화 번호	조합원 수	소속된 총 연합단체 명칭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	소속된 단위노조 명칭	조직단위	조합형태	사업자 등록 (고유) 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고유)번호가 없고 대표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 급하는 경우에 기입)	설립 연 월일	회계 공시 결과
1														
2														
3														
4														
5														
6														
7														
8														
9														
10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국적 코드:)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소득금액 기준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출산 입양

내 · 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백만원) 초과여부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자료 구분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난임 시술비

65세이상 · 장애인 건강보험 선정특례자

실손의료 보험금

일반

장애인

교육비

인적공제 인원수에 해당하는 항목에 적습니다.

0

(근로자 본인)

-

-

국세청계

기타 계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각종 소득 · 세액 공제 항목

자료 구분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시공연등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기재)

1~3월

4~12월

전통시장 사용분

1~3월

4~12월

대중교통 이용분

기부금

국세청 계

기타 계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인적공제 및 소득 · 세액공제 명세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 50①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①3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①3가)	2
배우자 (「소득세법」 § 50①2)	3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입양자) (「소득세법」 § 50①3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 50①3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 50①3다)	6	수급자(코드 1~6제외) (「소득세법」 § 50①3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 50①3마)	8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하며,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및 소득기준

-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합니다.
- 소득금액기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4.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장애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와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6.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I .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총(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 연금보험료		총(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III . 특 별 소 득 공 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총(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총(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보험료 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30년 이상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10년 ~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이월분)		특례기부금					기부금이월액		작성방법 참조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기부금이월액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이월액								
	기부금이월분(합계)												
	IV .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납입액 40%와 72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투자조합 출자 등		2021년 출자·투자분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2022년 출자·투자분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2023년 출자·투자분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② 직불·산불카드			사용금액								
		③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④ 도서·공연사용분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사용금액								
		⑤ 전통신장사용분			사용금액								
		⑥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계(①+②+③+④+⑤+⑥)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구분

세액감면·공제명세

세액감면·공제 명세

V. 세액감면및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VI.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2. 종(전)근무지 명세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결정세액	
3.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 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② 기부금명세서 (), ③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유의사항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원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인적공제 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등이 있는 경우 자녀란에 "○"표시를 합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에는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 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특별소득공제명세 작성방법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해당 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차입분, 거주자로부터 차입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2011년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미만, 15년 이상 29년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 30년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으로 구분하여 적고, 2012년 이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은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환분과 기타 상환분을 구분하여 적고, 2015년 이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기부금(이월분)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 해당 연도 기부금액과 합하여 기부금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 적용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개인연금저축공제		공제금액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투자조합 출자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10%까지 공제되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 등의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공제됩니다. ※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공제	2021년 ~ 2023년 출자·투자분	10%(100%,70%,3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따른 공제대상액의 합계액(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사용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정합니다. 3. 공제금액: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7천만원 초과자는 각 지불수단별 사용금액의 합계액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4~12월 사용분 5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80% ③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이하 이 서식에서 "도서·공연등 사용분"이라 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합니다)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4~12월 사용분 40%)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이용(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⑤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 15%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1~3월)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1~3월)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1~3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4~12월) + 전통시장 사용분(1~3월)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1~3월))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1~3월)) × 4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1~3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4~12월) + 전통시장 사용분(1~3월)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1~3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4~12월) + 전통시장 사용분(1~3월) + 전통시장 사용분(4~12월)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1~3월))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4~12월) + 전통시장사용분(1~3월)) ×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1~3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4~12월) - 전통시장 사용분(1~3월)) × 5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1~3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4~12월) + 전통시장 사용분(1~3월) + 전통시장 사용분(4~12월) + 대중교통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1~3월))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4~12월) + 전통시장사용분(1~3월)) × 40% + 전통시장 사용분(4~12월) × 5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1~3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4~12월) - 전통시장 사용분(1~3월) - 전통시장 사용분(4~12월)) × 80%	
4.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④ + ⑤ + ⑥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④ + ⑤ + ⑥)의 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연 1,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금삭감액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해당 과세기간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해당 과세기간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작성방법

외국납부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연금계좌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적습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600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입니다. 3. 공제세액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공제를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15%를 적용합니다.)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5. 연금계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 8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생명·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하여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2. 근로자인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의료비공제금액은 근로자인 거주자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나.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합니다)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다. 장애인 의료비(「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에 한한다) 및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해야 합니다)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 한도) 마. 보청기 구입비용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사.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이전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교육비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하여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후 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중·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비, 국외교육비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2.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학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에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기부금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한도액: 연간 5백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해당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4.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① 특례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② 일반기부금 한도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0%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021년, 2022년에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유의 사항

-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신용카드·주택마련저축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받게 됩니다.
-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입소통지서등)
특별소득 공제	주택자금	1.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대중교통 이용분 증빙자료(승차권 등)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다음에 해당하는 영수증 가.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라.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및 의사 등의 처방전 마.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의 경우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유의사항

※ "*"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제청 홈텍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 납입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투자연도	투자 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가입일	계약기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성 방법

-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계약기간"란은 계약기간을 개월 수로 적습니다.(월수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합니다.)
-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여부 []여, []부]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 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⑫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7.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⑳ 공제 금액
				㉑ 계	㉒ 원금	㉓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㉔ 임대인 성 명 (상 호)	㉕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㉖ 유형	㉗ 계약 면적(㎡)	㉘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㉙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㉚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㉖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㉙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7.01.01.

작성 방법

-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소득·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⑨, ㉖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 ㉚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2018년 1월 1일 이후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려는 종교관련종사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을 하고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즉시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국 적				(국적 코드:)	
근무기간 ~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변동	
1.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 구분	기부금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		
	0		○				기타		
		(근로자 본인)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제50①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제50①3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제50①3가)	2
배우자 (「소득세법」 제50①2)	3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임양자) (「소득세법」 제50①3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제50①3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제50①3다)	6	수급자(코드 1~6제외) (「소득세법」 제50①3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제50①3마)	8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 47 -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I. 연금보험료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료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III. 소 득 공 제	기부금 (이월분)	특례기부금	기부금이월액		
		일반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제외)	기부금이월액	작성방법 참조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이월액		
		기부금이월분(합계)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납입액 40%와 72만원
	투자조합 출자 등	2021년 출자·투자분	벤처 등		
			조합1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2		
		2022년 출자·투자분	벤처 등		
			조합1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2		
		2023년 출자·투자분	벤처 등		
			조합1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2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구분	세액감면·공제명세	세액감면·공제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IV. 세액 감면 및 공 제	연금 계좌	공 제 종 류		명세	작성방법 참조	12% 또는 15%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연금계좌 계				
	특별 세액 공제	기 부 금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100/110
			기부금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5.25%
			고향사랑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100/110
			기부금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5%
			특례기부금		기부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일반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제외)		기부금액	15% 또는 30%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액	(2021년 2022년과 경우 20% 또는 35%)
			기부금 계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 종교단체명 등	
				종사기간	직책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5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VI. 추가 제출 서류

1. 종(전)	종(전)종교단체명	종(전)종교인소득 총액	종(전)근무지 종교인소득
근무지 명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종(전)결정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2. 연금·저축 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기부금명세서 (), ②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유 의 사 항

1.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전)근무지의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제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세액"란은 종교관련 종사자 본인이 적지 아니하고 빈칸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5.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7.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세액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명세 작성방법

기부금(이월분)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기부금액과 합하여 기부금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2010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5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10%까지 공제되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 등의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공제됩니다. ※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21년 ~ 2023년 출자·투자분	10%(100%, 70%, 3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 신락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해당 과세기간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작성방법

연금계좌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적습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600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 입니다. 3. 공제세액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4. 연금계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 5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한도액: 연간 50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30%(2015년 과세기간 이후에 발생한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3.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① 특례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② 일반기부금 한도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0%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021년, 2022년에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외국납부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유 의 사 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종교관련종사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달장애서비스 제공기관 입소통지서등)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유 의 사 항

- ※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 ※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2. 연금계좌 소득·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가입일	계약기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성 방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계약기간"란은 계약기간을 개월 수로 적습니다.(월수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합니다.)
5. 공제금액란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소득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소 득 · 세 액 공 제 명 세 (년도)

④ 기본공제 대상자					⑤ 추가공제 등 대상 여부				
공 제 대 상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결혼 후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출산· 입양자
본 인			-						
배 우 자			-						
부양가족			-						
"			-						
"			-						
"			-						
"			-						

「소득세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기본공제: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표시된 제출 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세대주·공제 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그 밖에 공제 관련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1.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3.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서 *선택사항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기본공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④란에 적습니다.
 - 가.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습니다.
 - 나. 부양가족
 - 1) 연금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습니다. 다만,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가) 직계존속: 60세 이상인 경우
 - 나) 직계비속 · 입양자: 20세 이하인 경우,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다)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마)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 2)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 ·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 · 자녀 등은 적지 않습니다.
2. 추가공제 등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경로자, 장애인, 8세 이상 자녀 또는 출산 · 입양자가 있거나 연금소득자 본인이 부녀자 세대주, 한부모 세대주인 경우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하는 것으로서 ⑤란에 대상 여부에 "○"표시를 합니다.
 - 가.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 나. 장애인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 다. 부녀자공제: 연금소득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만 5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 라. 한부모 가족 소득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마. 출산 · 입양자(자녀세액공제): 출산 ·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 입양자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합니다.
3. 공제대상 항목 중 작성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신청인	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대상자	⑨ 성명	⑩ 신청인과의 관계

I. 교육비 부담 명세

⑪ 납부연월	⑫ 종 류	⑬ 구 분	⑭ 총교육비(A)	⑮ 장학금 등(B)		⑯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A-B)
				학비감면 등	직접지급액	
.						
.						
.						
.						
계						

II. 교복 구입 명세

⑰ 구입연월	⑱ 품 목	⑲ 수 량	⑳ 단 가	㉑ 금 액
.				
.				
.				
.				
계				

사용목적	교육비공제 신청용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작성대상자: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기관 등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또는 「장애인재활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중·고등학생에게 교복을 판매하는 사업자

1. "신청인" 란에는 교육비를 지출한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대상자" 란에는 지출된 교육비의 수혜자를 적습니다.
3. "Ⅰ. 교육비부담명세"란에는 교복구입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에 한정함)은 "Ⅱ. 교복구입명세"란에 적습니다.
4. "⑫ 종류" 란에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대학교, 전공대학,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재활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한국장학재단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⑬ 구분" 란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현장체험학습비, 특별활동비*(단,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특별활동비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에 한정함), **대학입학전형료**, 보육비용, 장애인특수교육비, 학자금상환액, 그 밖의 교육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는 포함하되,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는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6. 해당 연도에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2항에 따라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학비를 감면받았거나 계좌입금 등으로 직접 지급받았는지를 불문하고 그 장학금 등의 합계액을 ⑮ 장학금 등의 수혜액란에 모두 적습니다.
 -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 나.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 다.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 라. 국외근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 마.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 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
 - 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6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
7. "⑭ 총교육비(A)" 합계금액이 "⑮ 장학금 등의 수혜액"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⑮ 교육비부담액(C=A-B)"란에 "0"을 적습니다.
8. 중·고등학생 교복 판매업자는 교복(체육복 포함)구입 명세를 Ⅱ. 교복구입명세란에 적고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기 부 금 명 세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인적사항	① 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② 해당 연도 기부 명세

⑦ 코드	⑧ 기부내용	기 부 처		⑪ 기부자			건수	기부 명세			
		⑨ 상호 (법인명)	⑩ 사업자 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기부금액			
								⑫ 합계 (⑬+⑭)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	공제제외 기부금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⑮ 기타									

③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제외 기부금	
		특례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우리사주 조합 기 부 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코 드		10	20	43	40	41	42	10, 40, 41	50
합 계									
본 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④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⑯ 기부금액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 금액(⑯-⑰)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세액(소득) 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⑤ 노동조합 회비 명세

⑦ 코드	⑪기부자			⑲노동조합		⑳적정공시 노동조합 회비 납부액		㉑ 비적정공시 노동조합 회비 납부액	
	관계 코드	성명	주민등록 번호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등	1월~9월 납부액 (공제대상)	10월~12월 납부액 (공제대상)	1월~9월 납부액 (공제대상)	10월~12월 납부액 (공제제외)

작성방법

※ 기부금을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⑦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도 아래의 기부금 유형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가. 특례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10"
 - 나.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20"
 - 다.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43"
 - 라.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코드번호 "40"
 - 마.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번호 "41"
 -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번호 "42"
 - 사.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 외 기타", 코드번호 "50"
2. ⑧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⑨ 상호(법인명)란: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⑨ 상호(법인명)란과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습니다. ⑫ 기부 명세 합계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⑪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⑬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3" "40" ~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1", "4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⑮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0. "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는 "2. 해당 연도 기부 명세"의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손급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급에 산입합니다.
(2013년 이후 기부금부터)

구 분	특례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코 드	10	20	43	42	40	41
이월공제가능기간	10년	-	-	-	10년	10년

12.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 가.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 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 다.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⑮ 기부금액,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금액 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라.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에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순서로 공제하고, 일반기부금에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 바. 2013.12.31. 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우선하여 공제하며,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사. 이월기부금 공제 후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3. '5. 노동조합 회비 명세' 작성 방법
 - 가. ⑲ 노동조합 란: 회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나. ⑳ 적정공시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란: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금액을 1월~9월 납부액과 10월~12월 납부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다. ㉑ 비적정공시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란: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금액을 1월~9월 납부액과 10월~12월 납부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80조 제7항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에</u> <u>게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u> <u>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u>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 35의4. (생략) <u><신설></u>	제100조(일반서식) ----- -----. 1. ~ 35의4. (현행과 같음) <u>35의5. 제44조의2제7항에 따른</u> <u>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u> <u>서는 별지 제33호의5서식에</u> <u>따른다.</u>
36. · 37. 삭제 38. ~ 44. (생략)	38. ~ 44. (현행과 같음)